

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48,551,934	22,456,558
일반회계	666,147,458	19,984,424
특별회계	82,404,476	2,472,134
공기업특별회계	12,089,066	362,672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12,089,066	362,672
기타특별회계	70,315,410	2,109,46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92,592	29,778
주차장특별회계	313,000	9,3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57,045	61,7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440,388	763,21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34,304	16,029
치수사업특별회계	377,068	11,3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00,000	30,000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38,484,000	1,154,520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000	30,000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117,013	3,51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614,31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